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9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94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포천시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소3644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4. 12.

판결선고 2022. 5. 10.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소364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1. 이후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기각.

이 유

1. 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21. 3. 25. 선고되었는데 소장부분부터 판결정본까지 피고에 대한 송달은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2021. 6. 30. 판결정본을 영수한 다음 2021. 7. 6.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제1심 판결문을 기초로 피고의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2021. 6. 9. 추심을 완료하였다거나 피고가 2021. 6. 17. 원고에게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이 인출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1994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근거 - 갑2,3, 변론 전체의 취지 등]

원고는 2014. 10. 무렵 피고에게 포천시 C 부근 임야개발 허가 관련 업무를 맡기면서 4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 2017. 5. 무렵 D 임야 용도변경 허가 관련 업무를 맡기면서 1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아직까지 원고가 맡긴 업무들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3.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관계는 이행되지 않은 채¹⁾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받은 돈 5백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와 50만 원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1만으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황현찬, 판사 오성우

1) 피고는 변론종결 후 용역비 400만 원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자료들만으로는 해당 용역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